

「칸타빌 디 에디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대상

- 단 지 명 : 칸타빌 디 에디션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24-67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5층, 지상 24층 9개동, 총 612세대 (특별공급 337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61세대)
- 입주시기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상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066.9500	66A	66.9500	21.5546	88.5046	52.0307	140.5353	197	20
066.9695	66B	66.9695	22.0079	88.9774	52.0458	141.0232	118	12
084.9582	84A	84.9582	26.1553	111.1135	66.0259	177.1394	212	22
084.7529	84B	84.7529	27.3779	112.1308	65.8664	177.9972	63	7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배정 세대수 (*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내 공급)

구분	66A	66B	84A	84B	합계	
국가유공자 등	3(15)	2(10)	4(20)	1(5)	10(50)	
장기복무 제대군인	3(15)	2(10)	4(20)	1(5)	10(5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15)	2(10)	4(20)	1(5)	10(50)	
중소기업 근로자	4(20)	2(10)	3(15)	1(5)	10(50)	
장애인	경기도	3(15)	2(10)	3(15)	1(5)	9(45)
	서울특별시	2(10)	1(5)	2(10)	1(5)	6(30)
	인천광역시	2(10)	1(5)	2(10)	1(5)	6(30)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5.11.17.(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칸타빌 디 에디션 홈페이지 (www.cantaviltheedition.com)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OPEN	추후 안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4-1
특별공급 청약 접수	25.11.27.(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발표	25.12.05.(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가능한 사용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자격확인 서류) 또는 청약자 본인 공동인증서 지참 시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가 허용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

4. 자격요건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추천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 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 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 관리됩니다.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 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72 763 1437 949">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3">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 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 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72 1653 1433 1760">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포시 및 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 이상</td> <td>250만원 이상</td> <td>200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포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포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추첨으로 선정하며,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잔여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대표번호	031-376-8111
홈페이지	www.cantaviltheedition.com

6. 위치안내



건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4-1



현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4-1